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2/ 19 통권 171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주택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국제기구의 Good Governance 논의들
-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소급하여 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무상 처리방법
-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주택임대소득 자주묻는 질문
- 2030 올리는 스프레드,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 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사업자가 공급하는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p.12)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 經營 戰略

####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점>

구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이자·배당소득		각 지급하는 때 발급(단,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통지 가능)
근로소득	계속근로자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연말정산) (단, 2인 이상 복수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즉시 발급해야함)
	중도퇴사자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일용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급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그 외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발급
연금소득		지급하는 때 발급(단,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액의 연간 합 계 원천징수세액 명세 등 통지 가능)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그 외 기타	실제 지급하는 때 발급(단, 100만원 이하 금액이면 발급의무 생 략 가능)

(안사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15호 / 주간 8호

2025. 2. 19.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점	표지
CEO의 경영산책	국제기구의 Good Governance 논의들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차량으로 승용차 구매 후, 포괄양도양수 및 판매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5
	- 온라인쿠폰 인지세 관련하여	6
	- 전자매입계산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	
	- 국제운송용역 영세 처리	
눈에맞는 절세미인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소급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무상처리방법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상속세 현행·개정안 비교	9
	- 올해 변화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10
직장인Survival	결국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②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제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함 (기준법규국조-69, 2024.07.31)	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2445, 2024.08.30)	13
세정뉴스와 해설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일시적인 강연료·자문료 지급 주의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사업자가 공급하는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12
세무정보	-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15
	- 주택임대소득 자주묻는 질문	17
	- 2030올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유아치원 세무조사	25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34
	- 국제청·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46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6

# 국제기구의 Good Governance 논의들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최근 우리 국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글로벌 관점에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과 포용과 통합적 리더십의 확립이 중요하다. 우리 국가의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국제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은 정부만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아니며, 정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1)</sup> 즉, 민간부문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다양한 수준의 정부 간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민간 부문의 책임과 역량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으로부터 탈피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이러한 시민의식에 근거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실질적인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거버넌스는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의미가 강하다. 거버넌스가 어떠한지 하는지에 관한 규범적인 개념으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책임성, 투명성, 형평성,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관료들의 윤리적 행태가 확보되는 이상적인 거버넌스를 말한다.

1)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한국거버넌스 연구의 경향과 한계, 국정관리연구 제16권 제3호(2021.9) P. 281.

## IMF의 거버넌스

1997년 IMF는 경제적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였다(“The Role of the IMF in Governance Issues”)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는 회원국과 보다 시스템적으로 효과적이며, 자발적인 보다 공평한 약정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즉 “거버넌스 정책” : Framework for Enhanced Engagement on

Governance (Governance Policy)을 채택하였다<sup>2)</sup>.

위와 같은 정책은 경제활동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국가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i) 재정 거버넌스 (ii) 금융 부문의 감독 (iii) 중앙은행의 거버넌스와 운영 (iv) 시장의 규제 (v) 법치(rule of law) (vi)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과의 싸움. 거버넌스 정책은 부패에 연계된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외국공무원에 뇌물에 주거나 부패 은폐 목적의 서비스 제공을 예방에 관심을 두고 있다.

2)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imf.org)

## UNDP<sup>3)</sup>의 거버넌스

3) Home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은 거버넌스의 개념을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의 행사를 동반하는 의사결정 과정(Process of Decision-making)’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명성(Transparency), 효과성(Efficiency), 참여성(Participation) 모두를 갖춘 경우를 ‘굿 거버넌스’라고 한다. UNDP는 거버넌스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위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민들과 각종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모색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모색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자신들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복잡한 메커니즘, 과정, 관계, 제도로 시민사회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버넌스(UNDP 1997)는 사회내에서 권력을 배분하고 공공자원과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다<sup>4)</sup>.

4) 김석준외, 거버넌스의 이해, 경기도, 대영문화사, 2023년 2월, 김석준 외 (2023), p.244.

### UNDP가 제시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참여(Participation) : 모든 시민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합법적 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의사결정에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참여는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
2. 투명성(Transparency)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의사결정 과정, 제도 및 정보는 관심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3. 책임성(Accountability) :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는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형평성(Equality) : 모든 시민들은 그들의 복지를 향상 또는 유지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5. 법치(Rual of law) : 법에 근거하여 권력이 운영되고, 국민들도 법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sup>5)</sup>

5)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추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OECD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거버넌스 원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2004년과 2015년 두 차례 시대흐름에 맞춰 원칙을 개정했다. 세계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거버넌스 원칙 3차 개정안이 채택됐다. 2023년 3차 개정원칙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사회위험을 관리하고 기업과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거버넌스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유효성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원칙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지속가능성 위험 관리와 정보공개 의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위한 거버넌스 원칙,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지속가능성 위험 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새롭게 구성됐다.

- △ 기업과 투자자는 넷제로·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위험 및 기회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에 기여한다.
- △ 이러한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관되며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촉진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및 의결권행사 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 △ 투자자와 이사, 경영진은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최선의 전략에 관한 건설적인 대화에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차량으로 승용차 구매 후, 포괄양도양수 및 판매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Q**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량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받아, 차량운반구등록 및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던 차에

1. 포괄양수양도로 동일업종의 사업자에게 양도 시, 차량운반구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넘길 수 있는지, 차량도 함께 넘겨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제외가 가능하다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 포괄양수양도 혹은 폐업으로 이후, 개인이 승요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사업용차량으로 사용했던(감가상각비) 승용차를 법인(중고차매매상 등)에게 판매 시, 개인에게 판매할 때와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혹은 다른 기타 내용)

**A**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은 제외하여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해당 승용차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업무용 승용차라면 포함시켜야 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 폐업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매각시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른 차별점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해당 중고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 온라인쿠폰 인지세 관련하여

**Q** 안녕하세요 온라인 쿠폰의 경우 고객이 구매하였다가 취소할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한건지요?

- 1) 구매 후 당일 취소의 경우
- 2) 구매 후 시일이 지나서 취소의 경우

위의 2가지 경우에 모두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건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면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인지세법 제3조제8호)

## 전자 매입계산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

**Q** "전자 매입계산서" (세금계산서 아님-계산서 임) 를 누락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매입계산서 이다 보니 부가세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세신고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가 수취한 매입계산서는 모두 전자계산서로 국세청 전송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A** 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2월10일까지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제출한 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올해 2월10일까지 제출하시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제운송용역 영세 처리

**Q** 현재 당사에서는 포워더 업체를 통하여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받을 때 각각 해외(업체)->국내(공항)->국내(회사창고) 운송비가 발생하는데, 포워더 업체에서 이 때 발생한 비용 중 공항도착 후 회사창고까지 오는 국내 운송비용을 영세율 적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업체에서 청구받은 그대로 처리해도 부가세법 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해외(업체)=>국내(공항) 만 영세율 적용하고 국내(공항)=>국내(회사창고) 운송비는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지 또한 검토 바랍니다.

**A** 국제운송업체가 해외출발지부터 국내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포워더업체의 청구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소급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무상 처리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방법은 각각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 신고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되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으면 된다.

이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반드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반영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경정청구서에 의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된다.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부가46015-3304, 2000.09.23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 소급하여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내 작성분만 매입세액공제 적용됨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천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때에도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된다.

◇ 공급시기 후에 소급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

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연제출가산세 있음
과세기간 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75-1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상속세 현행·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정부	민주당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8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5억원	10억원
자녀공제(인당)	5000만원	5억원	현행 유지
최고세율	50%	40%	현행 유지
최고세율 과표	3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현행 유지

### 화

#### 反기업 법안

상법 개정안	중간착취 방지 4법	노란봉투법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 양도나 합병, 분할시 고용 승계 의무화</li> <li>- 하청 근로자 파견 시 임금, 수수료 등 계약서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 파업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li> <li>-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 → 재발의 가능성</li> </ul>



## 올해 변화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금융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li> <li>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li> </ul>
	연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li> </ul>
세제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대상 확대</li> <li>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신규 주택 취득 시 혜택 유지</li> </ul>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 제도 연장(2026년말까지)</li> <li>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2026년 5월까지)</li> </ul>
공급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시행</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li> </ul>
제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중대 광고 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li> <li>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상향</li> </ul>
	연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아파트 층간소음 1등급 기준 적용</li> <li>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li> </ul>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2026년 5월까지)</li> <li>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2027년말까지)</li> </ul>



## 저출생 극복 세제혜택 주요내용

- ▶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 완료한 대한민국 거주자)
- ▶ 혼인으로 2주택 보유 시 양도세·증부세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 확대(기존 5년 → 10년)
- ▶ 자녀세액공제 금액 첫째, 둘째, 셋째 당 10만원씩 상향
- ▶ 자동차 취득 시 감면혜택 조건 3자녀 → 2자녀로 확대
- ▶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 결국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②

### 2. 예의범절이 깎듯하다

사회생활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어를 가려 쓰지 못하거나 말투가 공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의심하게 된다. 식사예절도 중요한데,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하거나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는다거나 짹짹 소리를 내며 먹는 행동은 습관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고치기가 어렵다.

예의범절 중에서도 인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일의 규모나 중요도와 상관 없이 어떤 만남에서든 억양이나 말투에 주의를 기울여 장소와 상대에게 맞는 적절한 인사를 건넬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중요하다. 나부터 마음을 열어야 상대의 마음도 열리기 때문이다. 거만하고 으스대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는 법이다.

### 3.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강한 운을 만들어낸다

운을 좋게 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자신을 믿는 마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겐 충분한 능력이 있다. 어떤 큰 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할지도 모르지만, 스스로는 언제나 그런 미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은 운이 좋다고 믿는 밝은 사람,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자신까지도 운이 좋아진다.

물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막연히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서 절대 잘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임스 앨런은 "운이 좋은 사람은 강한 신념을 유지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며 끈기있게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사업자가 공급하는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  
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  
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  
며,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함**

기준법규국조-69, 2024.07.31

### 질 의

- 2017.10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 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저가양수 방식으로 ◎◎ 억원 증여받음
- 2024.6월 과세관청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법인의 원천징수 납부가 없음에도, A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법인에 대하여 미달납부세액 고지 예정

### 질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7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2제5항에 따라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  
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  
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2, 2024.06.25

### 질 의

-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 용역을 공급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 제과-382, 2024.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2445, 2024.08.30

### ■ 질 의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 조특법 32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전환법인은 현물출자받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진행, 분양 실적은 ① 면적기준 67.7%, ② 당초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분양원가기준 48.6%임
- \* 전환법인이 신축한 건물은 집합건물에 해당함을 전제

### 질의

-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하여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2024.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2024.8.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①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56, 2024.06.10

### ■ 질 의

- 질의인은 박사학위 취득 후 '18.3.1.부터 '23.2.28.까지 외국 \*\*\*\*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근무하던 중 국내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3.1.4. 조기 퇴직하여 귀국함
- 국내 @@대학교 임용을 위해 퇴직하였으나 외국 \*\*\*\*와 수행하던 연구 중 마무리가 필요하여 한국에서 논문작성 및 단백질 구조 규명 등의 공동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 '23.1월 및 12월에 관련 논문 등을 출판할 때도 소속기관을 \*\*\*\*와 @@대학교를 병기함

### 질의

- 박사학위 취득 후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던 중 국내 복귀하여 취업하였으나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계속한 경우 이를 국외 연구기관등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은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일시적인 강연료·자문료 지급 주의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3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올해 기타소득 지급분부터 의무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지난해 시행된 월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의무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강사나 컨설팅은 모두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지만, 월급처럼 주기적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일시적으로 잠깐 나와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득분류가 다르다.

주기적인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가산세율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절반으로 감경된다(0.125%).

지난해의 경우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를 도입, 매월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명세서는 홈택스로 간편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세청 측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반도체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반도체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5%p(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1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p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K칩스법'은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의 경우 이차전자·백신·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의 경우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각각 적용받는다.

'K칩스법'이 국회 최종 통과 이후 시행되면 대·중견기업의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울러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말까지 현행 대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시아대로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5. 2

- 이번 예정신고부터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드립니다 -
- '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28입니다 -

- (개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sup>1)</sup>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sup>2)</sup>)가 신고대상입니다.

-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 2)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을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 시 제외

###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시장	K-OTC시장 外
대 주 주	○(①)	○(①)	○(③) (중소·중견기업 제외)	○(③)
소액주주	X	○(②)		

\*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의 거래

- (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입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신고안내) 2월 5일(수)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 (1차 발송, 2.5.) 카카오톡 → (2차 발송, 2.6.) 네이버앱 등 → (3차 발송, 2.7.) 문자메시지
  -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2.11.)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고도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리채움서비스

-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sup>1)</sup> 기능을 신설하여,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sup>2)</sup>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2.10. 예정)합니다.
  - 1) 지원대상 :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
  - 2)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양도소득금액
-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세율선택도우미

-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대주주(상장, 비상장 <sup>1)</sup> )		소액주주(상장 장외, 비상장 <sup>1)</sup> )	
중소기업	20%~25% <sup>2)</sup>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	20%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30%

1) 비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

2)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

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하여 대주주 지분을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필요

□ (성실신고)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 - 양도물건 종류 「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

□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 양도물건 종류를 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한 후, 항목별 도움자료 제공하여 해당 여부 선택 시 참고하도록 함

○ 4가지 항목 선택 후 조회 클릭하면 양도물건 종류, 세율구분 코드 자동 적용됨  
| 「세율 선택 도우미」 항목별 도움자료 |

항목	도움자료	비 고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 조회 가능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으로 이동	중소기업 여부 조회*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 업범위 >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or 확인서발급정보공개
상장주식 여부	양도일자 기준 양도 주식의 상장 여부 제공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확인 후 선택 필요
대주주 여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여부 자료 제공	
보유기간	양도일과 취득일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 주택임대소득 자주묻는 질문

- 국세청, 2025. 2

Q. 주택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 누구의 주택 수에 가산 하는지?

답변:

- 주택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 제 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Q.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답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Q.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답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Q. 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 '26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로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3년 귀속('24년 신고)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음
-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Q.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하는지?

답변:

- 2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됨

Q.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Q.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인지?

답변: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됨
-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

Q.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답변:

- 과세기간 종료일('24.12.3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Q.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답변:

○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월세에 대해 과세

Q. 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는지?

답변:

○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Q.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甲과 乙의 주택 수는?(甲과 乙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답변:

-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함
  -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
  -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0채, 乙은 1채

Q. 본인 단독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배우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하고 있고,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지분을 본인 40%, 동생 6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 보유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 가장 큰 동생의 보유 주택으로 보므로 본인은 단독명의 3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

-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 또한, 사례에서 공동소유 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해당 주택에서 형에게 귀속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형의 주택수에도 포함됨
- ※ '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소득령 §8의2③, '20.2.11. 개정)

Q.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답변:

-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면적은 고가주택 및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m<sup>2</sup> 이하) 등의 판단 시 적용

Q.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 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6년까지는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m<sup>2</sup>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Q.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답변:

-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 기여금이자율('24년 귀속 3.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m<sup>2</sup>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6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

Q.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 × 60% × 1/365(윤년은 366) × 정 기여금이자율('24년 귀속: 3.5%)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2)
  -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2)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Q. '24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주택을 3채, 소형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

-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자 해당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월세 임대수입은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Q. 공동 보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답변:

-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함

Q.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 국내 소재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함

Q.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 임대수입 계산방법은?

답변:

-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함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 월수: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1월  
②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0월

Q.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답변:

-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임대인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에 한함)함
-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Q.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답변: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4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임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 ~ 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 ~ 45%)하여 신고

**Q. 모두등록(세무서+지자체) 시 임대소득세 혜택은?**

답변: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등록을 한 경우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 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있으나,
  - '25년 5월 소득세 신고는 '24년 귀속으로 '25년에 세무서와 지자체를 모두 등록한 경우 세제혜택 적용 대상이 아님
  -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24년 중 임대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등록일부더 안분하여 계산함
  - (세액감면)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의 12분의 9 이상 모두 등록한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 (예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진·자동 말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12분의 9 이상 임대하지 않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조특령§96③(1))

**Q.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답변:

-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 비교

Q.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인데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신고 모두 적용되는지?

답변:

-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님

Q.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경우 불이익은?

답변:

-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소득세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는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부정무신고는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과소신고한 경우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무·과소납부 세액 × 납부지연 일수 × (22/100,000)

Q.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음

# 2030 올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 국세청, 2025. 2

##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 바가지와 추가금의 높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입니다.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대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의 유형은, ① 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② 산후조리원 12개, ③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입니다.

/ 세무조사 대상 /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24개	12개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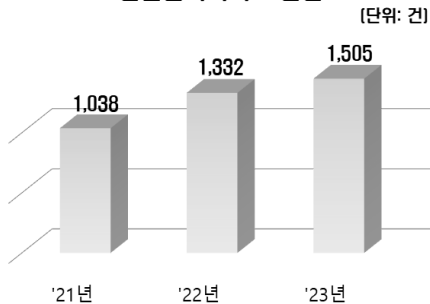
① [유형1] 불투명한 계약으로 결혼 포비아를 유발하는 스·드·메 업체: 24개

「지금 스·드·메 시장은...」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울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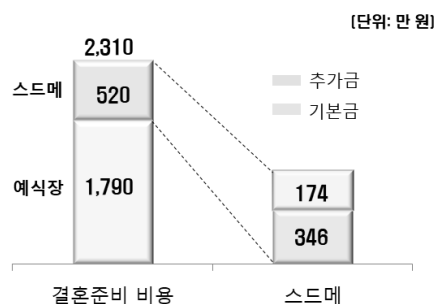
-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감감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입니다.
-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혼준비서비스 민원



·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2024.9.30.)

결혼준비 비용 및 스드메 추가금



·출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4.11.14.)

-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

하는가 하면,

-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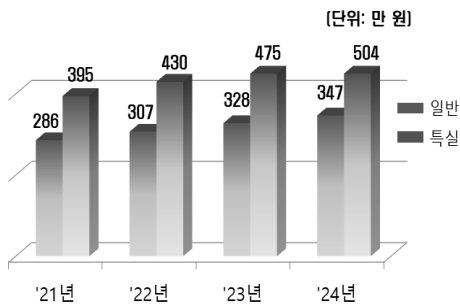
**② [유형2] 고가 이용료로 출산비용의 압박을 심화시키는 산후조리원 : 12개**

「지금 산후조리 시장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더라도,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 옵션에 마사지가 1회 제공되는데, 4~5회는 받아야 효과가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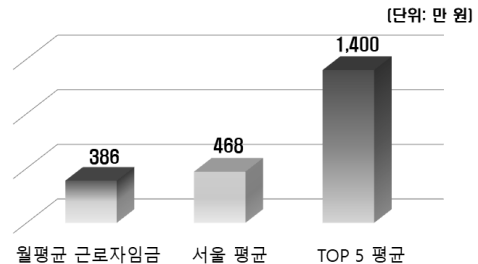
-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입니다.
-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객실료(2주 기준)



출처: 연도별 산후조리원 현황자료(보건복지부, 2024년은 상반기 기준)

월평균 근로자임금 대비  
산후조리원 일반 객실료(2주 기준, 2024.6.)



출처: 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2024.8.29.), 2024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보건복지부, 2024.10.25.)

-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

으며,

-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3 [유형3]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 :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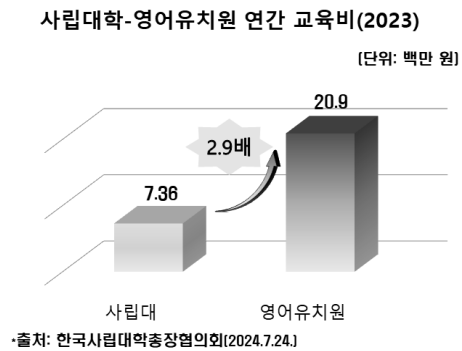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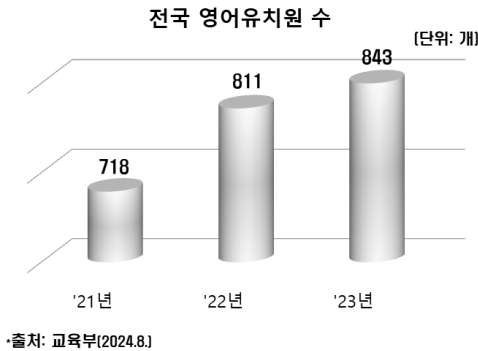
**「지금 영어유치원 시장은...」**

“어린이집은 22% 줄어드는데 영어유치원은 오히려 37%가 늘어났다”

“값비싼 유치원비에 에듀푸어가 될까 두려우면서도, 자녀교육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는 않다”

“영어유치원들은 대개 선착순으로 원비를 받는데 3초 안에 입금이 마감되기도 한다”

-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입니다.
-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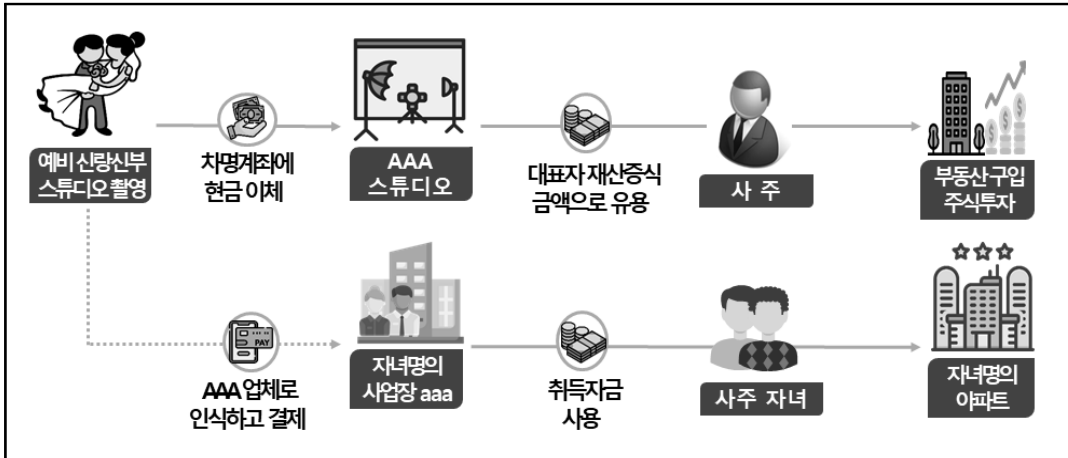
-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조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습니다.
-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습니다.

### 3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하겠습니다.
  -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 주요 착수사례

**사례 1**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자산증식에 유용하고,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스튜디오) 포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한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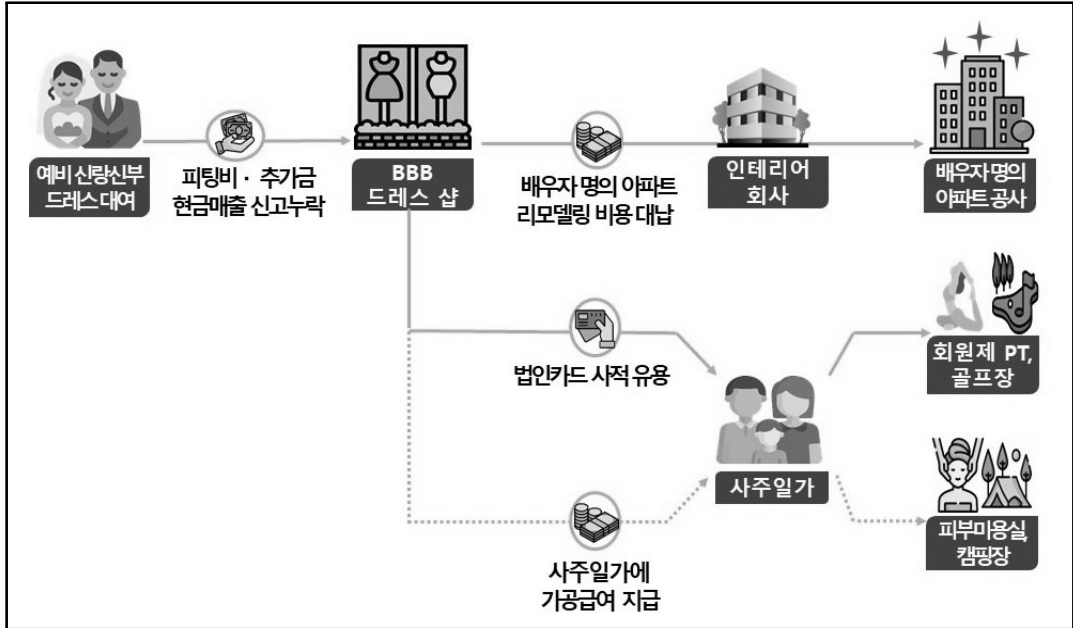
### □ 주요 탈루혐의

-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한 후, 사주는 이를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
- 또한, AAA의 제2촬영장을 당시 유학 중이던 자녀 명의의 aaa로 사업자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AAA 촬영대금으로 지급한 매출을 aaa로 분산함으로써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자녀가 aaa에 귀속된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

### □ 조사방향

- AAA의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및 사주와 자녀 명의의 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적정성 여부 집중 조사

**사례 2** 피팅비·추가금 매출을 누락하고, 사주일가의 개인적 용도에 쓰일  
 (드레스)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하며 세금을 줄인 드레스 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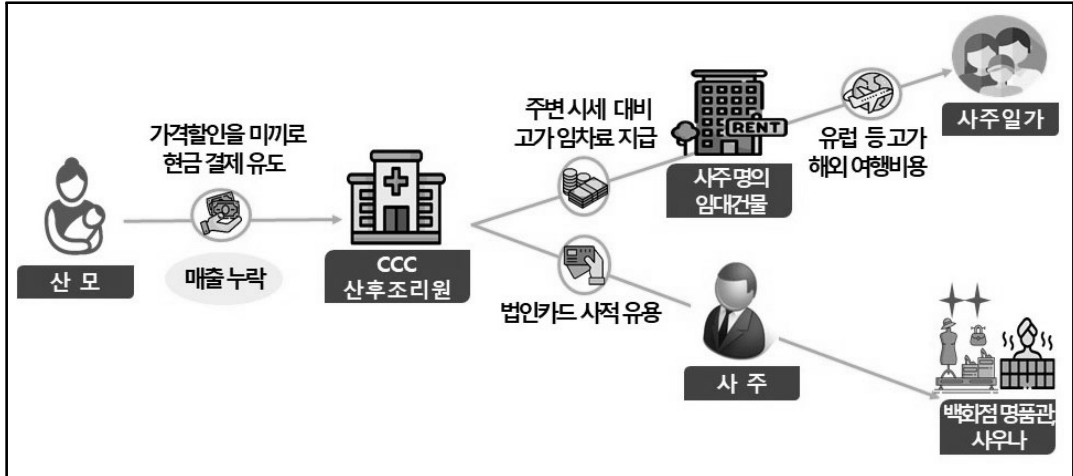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BBB는 인지도가 높은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으로,
  -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금도 10%의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
  - 또한, 사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거주지 인테리어 공사비 및 고급 회원제 PT, 골프장 이용료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BBB의 경비로 처리
  - 사주일가는 BBB의 영업시간 중 캠핑장이나 원거리 피부미용실, 골프연습장, 영화관을 이용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

□ 조사방향

- BBB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매출 분산 거래 및 경비 계상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엄정 조사

**사례 3** 할인을 미끼로 받은 현금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에게 과다 임차료를 지급하며 비용을 부풀린 산후조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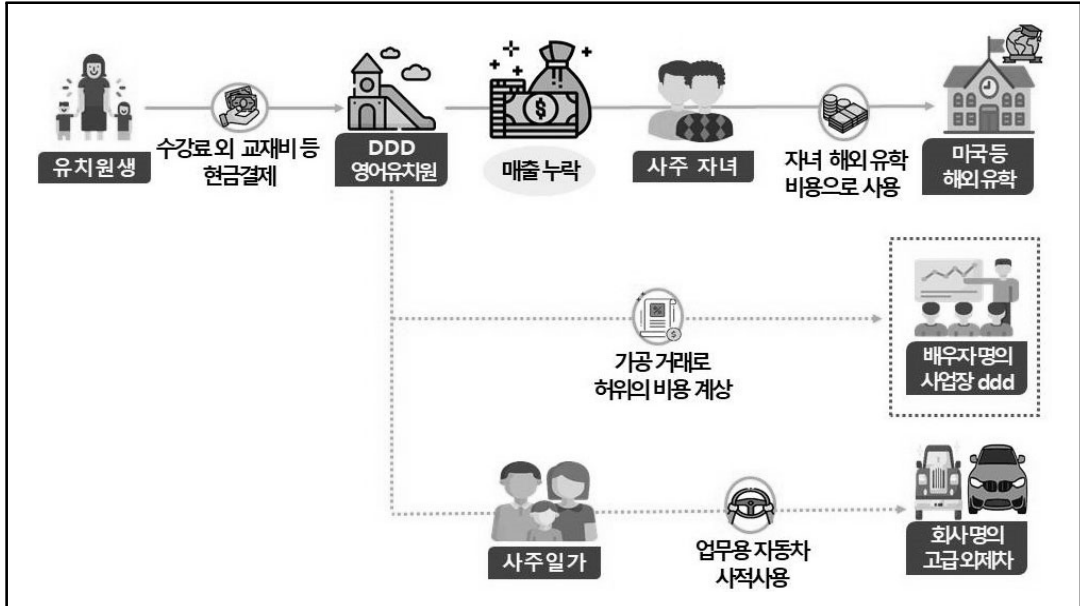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CCC는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으며, 고액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안할 때 할인액이 수십만 원에 달하여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
  - CCC는 현금으로 수취한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 및 부가서비스(마사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축소
  - 사주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유럽 등 고가의 해외 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

□ 조사방향

- 고가 임대차를 비롯한 CCC와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을 중점 검증

**사례 4** 교재비 등을 탈루하여 자녀는 해외 유학을 보낸 사주와, 가공거래를  
(영어유치원)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회피한 영어유치원



□ 주요 탈루혐의

- DDD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원비에도 불구하고 입학경쟁이 치열한 영어유치원으로,
  -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교재비·재료비·방과후 학습비 등은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였으며,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
- 또한, DDD는 DDD의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주 배우자의 업체 ddd로부터 마치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 그 외에 사주일가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처리

□ 조사방향

- DDD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가공거래 및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중점 조사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 국세청, 2025. 2

##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 1. 제도의 개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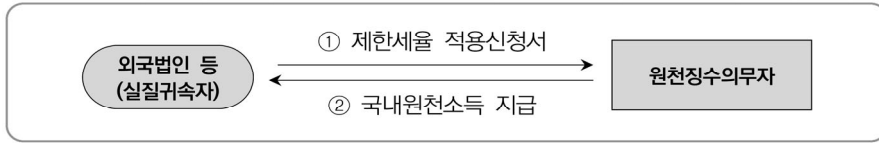
「법인세법」 제93조·「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6①, 소법§156의6①).

이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6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령§138의7①, 소령§207의8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과 달리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봅니다(법령§138의7⑤, 소령§207의8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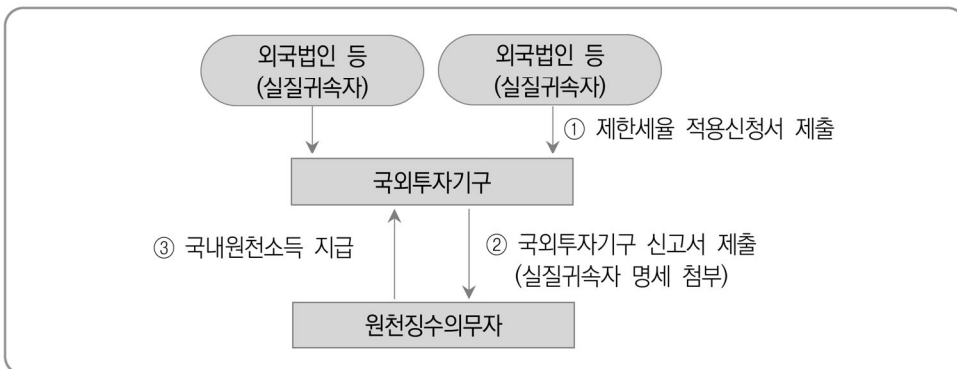
- 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 ②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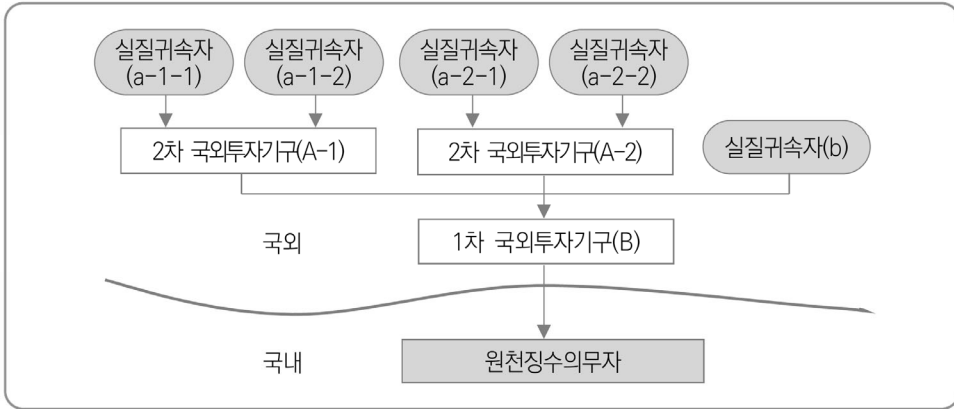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는 실질 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6②, 법령§138의7③, 소법§156의6②, 소령§207의8③).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법법§93의2①).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7⑥, 소령§207의8⑥).

#### ○ 실질귀속자 명세 작성 방법(법령§138의7④, 소령§207의8④)



- 국외투자기구(1차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2차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 국외투자기구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1차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 4.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합니다(법령§138의7③, 소령§207의8③).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②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③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닐 것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③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5.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실질귀속자란 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봅니다(법법§93의2①, 소법§119의2①).

###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③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위 ② 및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위 ③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6. 실질귀속자 불분명시 제한세율 적용배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98조제1항 및 「소득세법」제15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6③, 소법§156의6③).

이 경우 아래 ② 또는 ③은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③의 사유를 제외합니다(법령§138의7⑦, 소령§207의8⑦).

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신

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②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지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지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③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지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지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7. 서류 보관 및 제출의무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지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지구 신고서, 국외투자지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및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7⑧, 소령§207의8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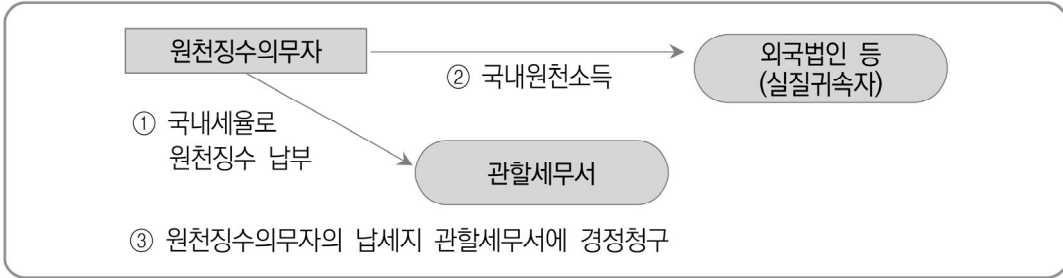
### 8. 경정청구 절차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법§98의6④, 소법§156의6④).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령§138의8①, 소령§207의9①).

-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②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③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지구 신고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1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지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 또는 국외투자지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지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법령§138의8②)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소령§207의9②),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법법§98의6⑤, 소법§156의6⑤).

**케이만군도 소재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법령해석과-2016, 2016.06.21)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제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0, 2014.09.17)

영국 법률에 따라 승인되어 설립된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임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

(서면법규과-1303, 2013.11.29)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 및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 1. 제도의 개요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제외)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청서등’ 이라함)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4①, 소법§156의2①) 이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4①).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4②, 법령§138의4③, 소법§156의2②, 소령§207의2②).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관할세무서에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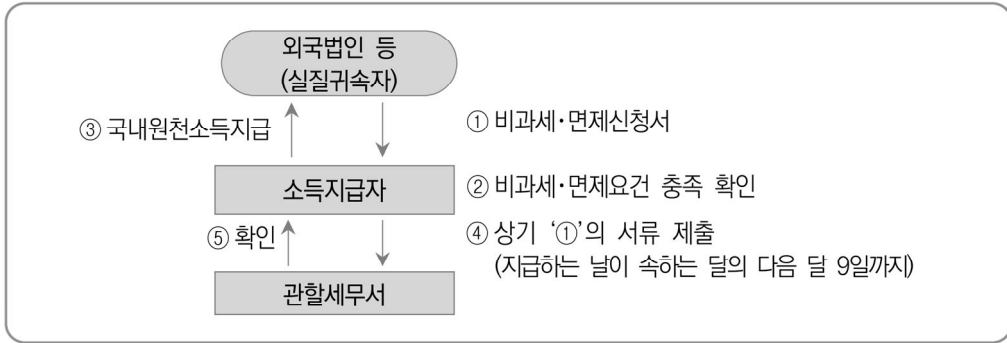
### 2.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법인세법」 제93조·「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청서등’ 이라함)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4①, 법령§138의4①), 소법§156의2①, 소령§207의2①).

이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4①).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4①).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4항,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4항,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제94조·「소득세법」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령§138의4⑥, 소령§207의2⑥).

\*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 ④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 등으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령 §138의4③, 소령§207의2③).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와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 및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 등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법령 §138의4④,⑤, 소령§207의2④,⑤).

### 3. 거주자 증명서 등 첨부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4②, 소령§207의2②). 다만,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소득지급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비과세·면제 적용받은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국외투자기구 및 계약상대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제외)에는 거주자증명서와 함께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주주 현황 등 설립정보, 최근 3년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사업정보 및 「법인세법」제93조제8호(사용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사용허여 계약서 등 해당 권리등의 등록지 및 소유권자·실시권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료소득인 경우만 해당)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4②, 법규칙§68의3①). 또한,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소령§207의2②).

\* 「소득세법」제119조 12호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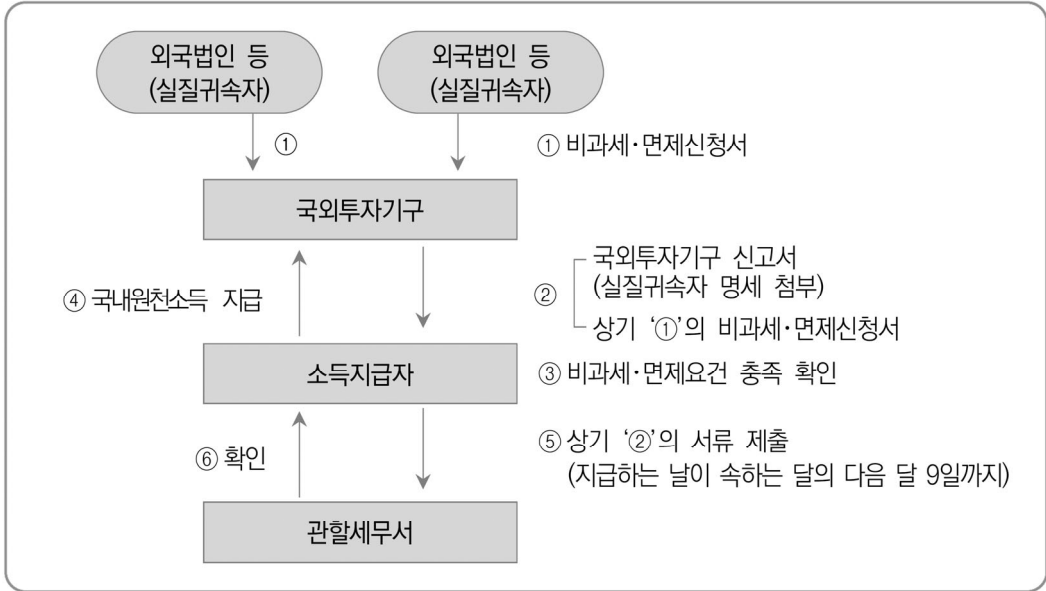
### 4.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면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령§138의4⑦, 소령§207의2⑦).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 5. 실질귀속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령§138의4⑨, 소령§207의2⑨).



#### 6. 실질귀속자 불분명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배제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4③, 소법§156의2③)

이 경우 아래 ② 또는 ③은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③의 사유를 제외합니다.(법령§138의4③, 소령§207의2⑬)

- ①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② 제출된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한정)
- ③ 제출된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한정,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또한,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면제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법§98의4④, 소법§156의2 ④).

### 7.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2023.12.31. 신설된 「법인세법」 제98조의8에 따르면,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함)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지급자는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8①).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소득지급 단계에서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법§98의8②, ③).

### 8. 그 밖에 사항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서류의 보관, 경정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와 유사합니다.

<b>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 2016.01.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후 일정 기간 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 이만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li> <li>2. 상기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li> </ol>

이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동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의4 제2항 및 「법인세법」제98조의6 제2항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12.27)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법규과-2045, 2007.04.26)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면제 신청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등

(서면2팀-977, 2006.05.30)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날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법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추후 거주자증명서 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 비과세 또는 면제가 확인되는 경우 기(既)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같은법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 포함)은 당초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임.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4.12.30.)	
<p>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1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소득 제외)은 「소득세법」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같은 조세조약 제16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별지 제29호의2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p>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7일 (금)	2월 10일 (월)	2월 11일 (화)	2월 12일 (수)	2월 13일 (목)
미 달 러 (USD)	1447.10	1447.40	1453.40	1453.50	1452.60
일 본 엔 (JPY)	956.48	954.40	956.47	952.80	941.44
영 국 파 운 드 (GBP)	1799.32	1792.68	1797.35	1809.10	1807.54
캐 나 다 달 러 (CAD)	1011.18	1009.31	1014.77	1017.43	1015.77
홍 콩 달 러 (HKD)	185.84	185.78	186.60	186.54	186.47
위 안 화 (CNH)	198.79	198.55	198.78	198.86	198.56
유 로 화 (EUR)	1502.81	1491.55	1497.73	1506.26	1508.74
호 주 달 러 (AUD)	908.92	905.06	912.66	914.91	912.31
싱 가 폴 달 러 (SGD)	1071.53	1066.54	1072.18	1074.44	1073.5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6.88	325.99	325.15	325.17	324.82

# 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 국세청, 2025. 2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월 5일(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입니다.
  -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입니다.
  -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 \*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119억 달러, 32.1%, '24년 기준)
  - \*\* '23년 양국 교역규모는 380억 달러(약 49조원)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7위 교역국
  -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①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②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③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



여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 또한, 양국 청장은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 강민수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에서 청취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특히 강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가칭 ‘코리아안데스크’)」를 개설하여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우리 진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